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송아량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아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회 선배·동료의원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택시 관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재정지원금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관리·감독 및 환수조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동 조례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택시 재정지원금에 대한 목적 외 사용 금지, 서울시 감독 의무 강화, 목적 외 사용 시 환수조치 및 해당 사업의 재정지원 제외 등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재정지원의 적정 사용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